

해커스 공무원 세법 기본서 (2017 개정판) 1쇄 추록

최종 수정일 : 2017년 04월 17일

아래 추록은 2017년 법령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본서 학습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법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p41 1 의의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1조).	2017. 01.16
p66 3 2. (1) ③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담보요구 가능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담보요구 가능	2017. 01.16
p67 3. 담보 제공요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임의규정).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간, 과거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17. 01.16
p127 (3) ① ㊸ 추가	-	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017. 01.16
p186 2. (5) ④, ⑤	④ 기타 위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 「 소득세법 」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⑤ 기타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017. 01.16
p189 1 2. (1) ②	②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②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2017. 01.16
p190 1 요건	납세의무자 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직불카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6	납세자 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직불카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	2017. 01.16

	조의2 제1, 2항).	1, 2항).	
p210 5 (5) 추가	-	(5)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2017. 01.16
p221 1. (2)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017. 01.16
p222 1. (2)	(2) 조세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제외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조세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①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③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2017. 01.16
p222 종합정리 불복대상 제외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제외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한 처분 ③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017. 01.16
p223 (3) ①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재결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2017. 01.16
p228 2. (3)~(6) 추가	-	(3)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017. 01.16

		<p>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p> <p>(4)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p> <p>(5)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p> <p>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처분기간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처분기간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6)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은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연장사유가 있어도 연장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p>	
p229 6. (1)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4·6항).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 7항).	2017. 01.16
p230 ㉓ 1. (7) 추가	-	(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2017. 01.16
p230 3.	3. 인용(認容) 결정 본안 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3. 인용(認容) 결정 본안 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2017. 01.16
p233 ㉓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2017.

	<p>를 거쳐 결정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p> <p>(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p> <p>(2)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거쳐 결정한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2항).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4항).</p> <p>(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p> <p>(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p> <p>(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p> <p>(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p> <p>①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p> <p>②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01.16
p247 5 2. (4)	(4)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 전 적부 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과세 전 적부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의 조사로 한정한다)	2017. 01.16
p252 12 (3) 추가	-	(3)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2017. 01.16
p254 2 1. (6)	(6)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6)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감사원법」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01.16
p255 2. (3)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경우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경우	2017. 01.16
p255 3. (4)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 01.16
p256 4 3. (3)	(3) 채택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 또는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017. 01.16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3) 채택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	2017. 01.16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말하며,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 채택하는 결정도 포함된다.	한 경우에는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p277 8 1. (1) ①	①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	① 고액 상습체납자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	2017. 01.16
p277 출제 키워드 문제 02번 문제	02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	02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	2017. 01.16
p278 8 1. (1) ③	③ 조세포탈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③ 조세포탈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2017. 01.16
p279 출제 키워드 문제 01번 문제 및 해설	01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 ×) 01 ×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01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 ×) 01 ×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2017. 01.16
p280 11 (5)	(5)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5항).	(5)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5항).	2017. 01.16
p293 보조단 고액·상습체 납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7. 01.16
p305 3. 내 용 추가	-	3. 체납처분의 위탁 (1)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처분 권한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3)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4)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의 위탁을 해	2017. 01.16

		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p305 보조단 추가	-	<p>체납처분의 위탁</p> <p>세무서장은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2017. 01.16
p305 번호 수정	<p>3. 위탁 수수료</p> <p>4. 위탁 해지 및 징수업무 감독</p>	<p>4. 위탁 수수료</p> <p>5. 위탁 해지 및 징수업무 감독</p>	2017. 01.16
p309 (6)	<p>(6) 징수유예의 취소</p> <p>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1, 2항).</p>	<p>(6) 징수유예의 취소</p> <p>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1, 2항). 세무서장은 아래 ①, ②, ④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p>	2017. 01.16
p350 4 내용 추가	-	<p>■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p> <p>1. 매각대행</p> <p>(1)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1항).</p> <p>(2) 선정된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2항).</p> <p>(3)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3항).</p> <p>(4)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4항).</p> <p>(5)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61조의2 제5항).</p> <p>2. 전문매각기관의 지정</p> <p>(1) 국세청장은 2년 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8 제1항).</p> <p>①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p>	2017. 01.16

		<p>한 경험이 평균 10회 이상(직전 2년 내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p> <p>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p> <p>(2)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절차 등 전문매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8 제2항).</p> <p>3.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절차</p> <p>(1) 세무서장은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 제1항).</p> <p>(2) 예술품 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 제2항).</p> <p>(3)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 제3항).</p> <p>(4)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9 제4항).</p>	
p351 번호 수정	<p>㉔ 수의계약</p> <p>㉕ 청산</p>	<p>㉔ 수의계약</p> <p>㉕ 청산</p>	2017. 01.16
p363 ㉒ 3.	<p>3. 세율적용방법</p> <p>(1)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p> <p>(2)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p> <p>(3)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비례세율(40%, 50%, 70%)을 적용한다.</p>	<p>3. 세율적용방법</p> <p>(1)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최저 6%에서 최고 4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p> <p>(2)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p> <p>(3)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비례세율(40%, 50%, 70%)을 적용한다.</p>	2017. 01.16
p387 ㉒ 1. (9)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2017. 01.16
p404 참고 內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38%)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 ~ 40%)	2017. 01.16
p416 ③	<p>③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중략)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p> <p>㉡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리</p>	<p>③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중략) ㉠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p> <p>㉡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리과세</p>	2017. 01.16

	과세		
p416 보조단 소형주택	소형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형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 이하인 주택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017. 01.16
p423 ⑩	⑩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⑩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17. 01.16
p441 2 1. (5) 추가	-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7. 01.16
p442 ⑥	⑥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임원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01.16
p450 (9) ⑩ 추가	-	⑩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의하여 지급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017. 01.16
p455 3.	3.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3.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2017. 01.16
p463 (20) ⑩ 추가	-	⑩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017. 01.16
p464 2. (4)	(4)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300만 원(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	2017. 01.16
p490 보조단 추가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2017. 01.16
p525 1 표 비교 내용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6~4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	2017. 01.16
p525 2 과	1억 5,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17.

세표준			01.16				
p525 ㉒ 과세표준 추가	-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 <th>기본세율</th> </tr> <tr> <td>5억 원 초과</td> <td>1억 7천 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td> </tr> </table>	과세표준	기본세율	5억 원 초과	1억 7천 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2017. 01.16
과세표준	기본세율						
5억 원 초과	1억 7천 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p526 보조단 추가	-	외국납부세액확인서 제출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017. 01.16				
p531 ㉓ (2) ㉔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㉑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㉒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㉓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2017. 01.16				
p532 맨 상 단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2017. 01.16				
p534 ㉕ ㉖ 추가	-	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017. 01.16				
p535 (4) ㉗	①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이 있는 경우	①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017. 01.16				
p589 보조단 보유기간 3.	3. 201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3. 201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017. 01.16				
p590 5. (1)	기본세율(6~38%)	기본세율(6~40%)	2017.				

① 2년 이상 보유 일반적 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01.16
p590 5. (1) ① 2년 이상 보유 비사업 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16~ 48% (법 개정)	16~ 50%	2017. 01.16
p590 5. (1) ② 2년 이상 보유의 양도 소득세율	기본세율(6~ 38%)	기본세율(6~ 40%)	2017. 01.16
p590 5. (1)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 유의 양도소 득세율	기본세율(6~ 38%)	기본세율(6~ 40%)	2017. 01.16
p591 (2) ②	②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6~ 38% (보유기간과 무관)	②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6~ 40% (보유기간과 무관)	2017. 01.16
p596 8. (1) ① ㉠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양도: 주식 및 출자지 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양도: 주식 및 출자지분 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 일이 속하는 반기(半期)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 01.16
p596 8. (1) ① ㉡ 추가	-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 01.16
p598 (4) ③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 한 권리의 세 율	기본세율(6 ~ 38%)	기본세율(6 ~ 40%)	2017. 01.16
p598 (4) ③ 기타자산의 세 율	기본세율(6 ~ 38%)	기본세율(6 ~ 40%)	2017. 01.16
p619 ③ 1. (1)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 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의 1,0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 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 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 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 년 내에 한한다.	2017. 01.16

<p>p619 ㉓ 1. (2)</p>	<p>(2) 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②와 ③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p>	<p>(2) 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②와 ③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p>	<p>2017. 01.16</p>
--------------------------	---	---	------------------------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p699 3 2. (5) 추가	-	(5)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액을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2017. 01.16
p727 3 ㉠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7. 01.16
p759 1 1. (4) ②	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② 마일리지, 포인트,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이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아래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을 말한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③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②의 ㉡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7. 01.16
p783 7. (4) ③	③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③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경우 ㉠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2017. 01.16

		<p>㉔ 「관세법」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p> <p>㉕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p>	
p800 (1) ①, ②	<p>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로 한다)를 곱한 금액</p> <p>② ①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를 곱한 금액</p>	<p>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로 한다)를 곱한 금액</p> <p>② ①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를 곱한 금액</p>	2017. 01.16
p819 1 2. (1) ①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를 곱한 금액(1,0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p>	<p>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p>	2017. 01.16
p824 3. (2)	<p>(2)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p>	<p>(2)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정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p>	2017. 01.16
p825 5 2.	<p>2. 국외사업장의 용역 등의 위탁판매 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에서 규정한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 권리의 공급에 대해서는 재화의 위탁매매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p>	<p>2. 국외사업장의 용역 등의 위탁판매 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에서 규정한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 권리의 공급에 대해서는 재화의 위탁매매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p> <p>(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금액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2017. 01.16
p840 3 2. (2) ③ 추가	-	<p>③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p>	2017. 01.16
p840 보조단 추가	-	<p>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p>	2017. 01.16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하는 게 아닌 전체 사업장의 거래분을 조기환급신고한다.	
p842 ㉓ 2. 표의 구분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7. 01.16
p843 ㉓ 3. 미제출·부실 기재의 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분 공급가액×1%	미제출·부실기재분 공급가액×0.5%	2017. 01.16
p843 ㉓ 3. 지연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지연제출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분 공급가액×0.3%	2017. 01.16
p844 ㉓ 4. 가산세	공급가액×1%	공급가액×0.5%	2017. 01.16
p859 ㉓ 1.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0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하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직전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2017. 01.16
p937 (2) ㉑ ㉒	㉒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따라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㉒ 법인분할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7. 01.16
p956 (17)	(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7)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7. 01.16

p960 10.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잉여식품 기증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7. 4.17
p968 (3) ①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방법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방법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부동산인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①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②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017. 01.16
p1113 ㉢ 1.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비고	5년간 이월공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월공제	2017. 01.16
p1114 보조단 추가	-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7. 01.16
p1115 4.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과다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다른 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일정한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환급하지 않고, 그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017. 01.16

		<p>②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p> <p>(2)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8조의3 제2항).</p> <p>(3)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법인세법」 제58조의3 제3항).</p> <p>①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한다.</p> <p>② ①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p>	
p1138 (5)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업소득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업소득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17. 01.16
p1143 (6)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숙박비·음식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숙박비·음식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17. 01.16
p1146 4. (2)	(2) 인적용역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2) 인적용역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017. 01.16
p1154 ■ 2. 완전모법인이 될 수 없는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2017. 01.16

법인의 ⑤ p1154 1. 2. 완전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의 ③	③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③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2017. 01.16
p1188 (4) ①	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2017. 01.16
p1194 3. (1) ① ㉠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017. 01.16
p1203 6. (2) ①	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2017. 01.16